

조사권역



경주사무소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도, 제주도

청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조사유형

표본	사업대상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조사
시굴	사업대상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조사
발굴	사업대상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조사

※ 입회조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1600-0064

발굴제도과 042-481-4951

한국문화재재단

상담/안내 1577-5805

본부 02-3011-2173

<http://www.cprc.or.kr>

경주사무소

경북 경주시 용강상리길 40-9

청주사무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노산2길 3-57

소규모 발굴조사는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사업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지원

문화재청은 개인 및 영세 사업자, 농어민 등의 소규모 건설사업의 발굴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소규모발굴 국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문화재단에 위임하여 전담케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건설공사로 인한 발굴조사에 드는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지원대상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지원기준(m²)

단독주택 ¹⁾		농어업시설		개인사업 ²⁾		공장 ³⁾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
792	264	2,644	1,322	792	264	2,644	1,32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2)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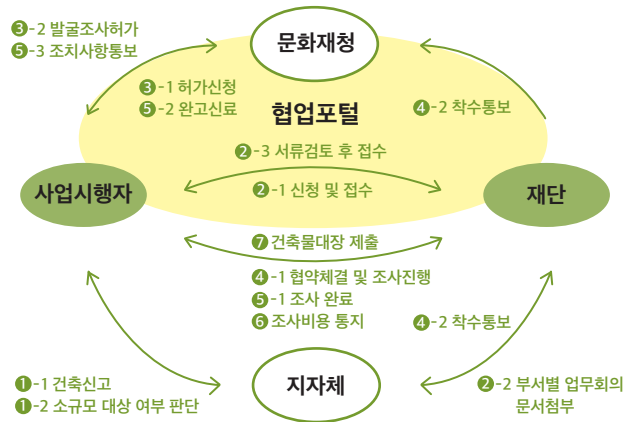
※ 동일 건설 목적의 발굴은 1인 1회 지원(단,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이전 발굴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당해 연도 신청량에 따라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 및 방법



1 건축신고 및 신청

- 사업시행자가 해당지자체에 건축허가 신고시 발굴조사 대상 여부 및 국비지원 대상 여부를 지자체 문화재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업포털을 통해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 신청
※ 사업시행자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사이트(<https://www.e-minwon.go.kr>)의 오른쪽 하단
“문화재 협업포털” 링크 창을 이용하여 별도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

2 접수 및 계획서 제출

- 지원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해당 조사(표본, 시굴, 발굴)에 대한 세부 조사계획서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3 허가신청 및 허가

- 사업시행자가 협업포털을 통해 문화재청 발굴허가 신청, 문화재청은 발굴허가

4 협약체결 및 착수

- 문화재청과 지자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자와 조사에 관한 협약을 작성한 후, 현장조사 착수

5 완료

- 현장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 결과보고서 등 완료자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송부
- 사업시행자는 협업포털을 통해 완료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에 완료신고

6 조사비용 통지

- 재단은 조사완료 후 3개월 내 조사비용내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7 건축물대장 제출

- 사업시행자는 건축행위 완료 후 2주일 이내 건축물대장을 재단에 제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모든 행정절차는 문화재청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https://www.e-minwon.go.kr>)

신청 시 구비서류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건축공사 계획서(건축배치도, 건축도면 및 지하굴착계획, 수목식재계획 포함)
-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 토지(임야)조서
-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용도 신청시)
- 농어업인 증명(농지원부, 어업인경영체 등록증 등) 서류 (농어업시설 신청시)
- 소규모 공장임을 증명(사업자등록증)할 수 있는 서류 (소규모 공장 신청시)
- 입회·표본·시굴조사 약보고서 등 선조사자료 일체
- 토지사용승낙서 및 소유주 인감증명서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닐 경우)

※ 상기 구비서류는 반드시 JPG 또는 PDF로 제출

조사비용의 환수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0조를 근거로 국비를 지원받은 건설시행자가 허위 자료 제출로 국비를 지원받았거나,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벗어난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의 경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은 자에게 환수할 수 있음.

- 발굴조사 후 또는 건설 준공 후, 실제 건설공사의 범위가 지원 기준을 초과한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용도변경에 따른 증축, 합필 등을 통하여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발굴조사 국비를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 건설 행위를 준공하지 않은 경우
- 그 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